

2026년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용자사업 계획

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 및 「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」 제4조(기금의 용자계획)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용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1. 6.

부 산 광 역 시 장

1. 용자 목적

- 식품위생영업소(식품제조·가공업, 식품접객업소)의 시설 개선을 통한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환경 제공
- 영업자의 시설개선 비용 부담을 줄여 업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, 위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여건 조성

2. 용자 기간

- 2026. 1. 6. ~ 12. 31. (선착순 지원, 용자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)

3. 용자 예산액 : 5억원 (식품진흥기금)

-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등

4. 용자 대상자

○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

- ▶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(HACCP) 영업자
- ▶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(※화장실 개선에 한함)
- ▶ 식품접객업 영업자(※단란·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함)
- ▶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

○ 모범음식점 육성자금

- ▶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

○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

- ▶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(※위탁급식영업자에 한함)

5. 용자조건

○ 용자기간 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

(단,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)

○ 용자이율

- ▶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: 연 1.5%
 - ▶ 화장실 개선(식품접객업소 외),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 지원자금: 연 1.0%
- ※ 금융기관 위탁수수료 1% 포함, 연체 시 지정 금융기관 연체이율 적용

○ 자금용도

구분	세부 내용(예시)
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	· 조리·작업장 바닥·벽면·천장 등 위생 마감 개선 · 환기·급배수 설비 교체 · 냉장·냉동 설비 교체 · 식품제조·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장비교체 · 식품제조·가공업소의 HACCP 도입을 위한 기기·설비 설치 · 기타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·설비 개선 비용
모범음식점 육성자금	·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 개선 비용
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	·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비용

○ 용자방법 : 담보 및 신용대출

※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용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

○ 상환방식 : 상환기간 중 원리금 및 이자를 매 분기 말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

6. 용자 한도

자금구분	용자대상	용자한도액	비고
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	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식품제조가공업소	3억원 이내	
	식품제조가공업소 중 시장이 선정하는 관광상품 개발 업소	2억원 이내	
	시장이 지정하는 부산향토음식점	2억원 이내	
	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집단급식소	1억원 이내	
	식품제조가공업소	1억원 이내	
	식품접객업소(화장실개선 포함)	1억원 이내	
	단란 및 유흥주점의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	1천5백만원 이내	
	식품제조가공업소(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)의 화장실 개선	1천5백만원 이내	
	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	1천만원 이내	
	한식세계화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영업장 면적 330㎡이상인 한식류 업소	3억원 이내	
모범음식점 육성자금	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	3천만원 이내	
	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업소	3천만원 이내	
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자금	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	1천5백만원 이내	

※ 용자지원 신청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용자 대상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음

※ 음식점 육성자금 및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은 시설개선자금과 별도로 추가 용자 가능

7. 용자 제한

-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「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위반 등 퇴폐·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
-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업소 및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
-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(용자한도액 전액 대출한 경우에 한함)
- 휴업 또는 임의로 폐업한 업소
-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(영업자 지위승계 포함) 후 3개월 미경과 업소
(단,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·보수 시 용자 가능)
- 식품접객업소(일반·휴게·제과 중 프랜차이즈 직영점¹⁾ 또는 전국 가맹점 수²⁾ 2,000개 이상인 브랜드 업소(☞파리바게뜨, 이디야커피, BHC, BBQ, 메가MCC커피 등)

- 1) **프랜차이즈 직영점** : 본사(가맹본부)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. 신청 상황에 따라 직영점이 아닌 프랜차이즈 가맹점 집단(3개소 이상) 신청하는 경우에도, 가맹본부 매출액이 업종별 상위 5위 이내인 브랜드는 용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2) **전국 가맹점 수** : 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정거래 위원회 '가맹사업거래>가맹희망플러스>정보공개서 비교정보' 자료('24년 말 기준)

8. 용자 신청방법

- 신청 접수기간 : 2026. 1. 6. ~ 예산 소진 시까지 (선착순)
 - ▷ 선착순 접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용자대상자 결정통지(대출 심사) 후 용자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 결정 ※지금 소진 시 신청 조기 종료
- 용자 신청기한 : 용자대상자 결정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
- 접수처 :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·군 식품위생부서
- 구비서류
 - ▷ 신분증, 용자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], 사업계획서[별지 제2호 서식], 평면도 및 견적서 등
 - ▷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는 은행에서 별도 요청
- 용자위탁 취급기관 : 위탁 금융기관(부산은행)
 - ▷ 용자업무 취급점 : 부산은행 전 영업점(출장소 및 영업소 제외)

9. 용자금 환수 대상 및 유의사항

- 용자를 받은 자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시에는 용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신규 용자 불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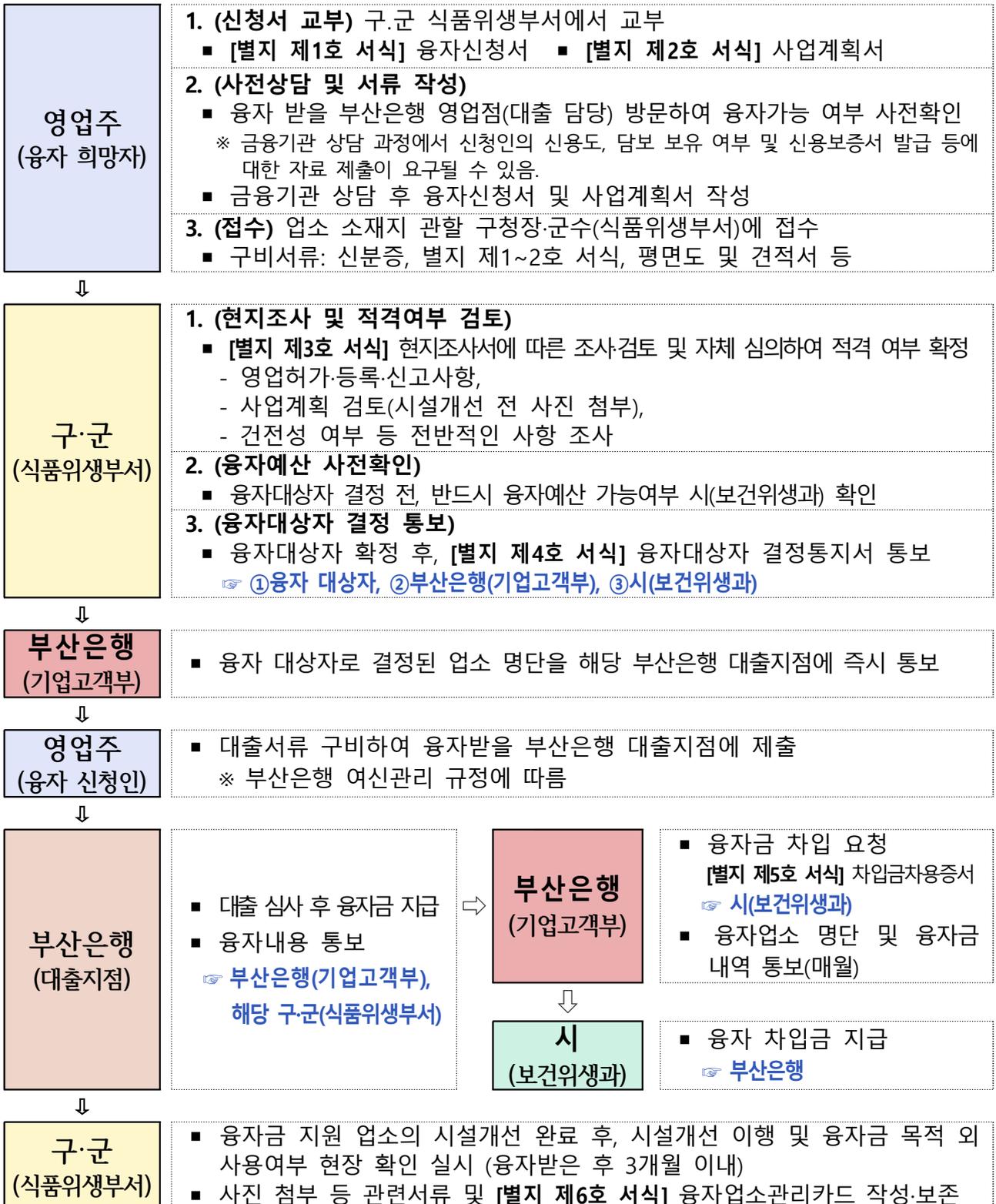
「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」 제8조 (용자금 환수 등)

- 용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받은 경우
- 용자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
-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용자받은 후 3개월 이내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

- 그 외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 및 모범음식점,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 용자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도 용자금 환수 대상으로 간주

- 식품진흥기금 용자를 위해 제출한 제반 서류(용자 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)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확인될 경우, 용자 결정 취소, 조기 상환, 향후 용자 제한 등 제재 또는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.

10. 용자 절차



- 용자금 차입 요청
[별지 제5호 서식] 차입금차용증서
☞ 시(보건위생과)
- 용자업소 명단 및 용자금 내역 통보(매월)

- 용자 차입금 지급
☞ 부산은행

11. 문의처

-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위생협력팀(☎888-3395)
- 구·군 식품위생부서

구·군명	연락처	구·군명	연락처	구·군명	연락처	구·군명	연락처
중 구	600-4415	서구	240-4401	동 구	440-4424	영도구	419-4404
부산진구	605-4412	동래구	550-4415	남 구	607-4415	북 구	309-4412
해운대구	749-4402	사하구	220-4415	금정구	519-4424	강서구	970-4424
연제구	665-4412	수영구	610-4404	사상구	310-4404	기장군	709-4415

붙임: 용자신청 관련 서식 1부. 끝.